

충주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2008. 10. 17(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보고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8. 9. 30	2008. 9. 30	2008. 10. 10	2008. 10. 10	수자원과장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	"	"	"	수자원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	"	"	지역개발과장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	"	"	"	건축디자인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체험을 통한 자연 보호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건립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적절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산7번지 일원에 '충주 KM그린골프장'이 입지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라.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도시주거 2단계사업 중장기 5개년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열악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등을 정비·확충하는 등 정주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자연생태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자연생태체험관 관람료 결정 (안 제4조)
- 개관일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함 (안 제7, 8조)
- 자연생태체험관 위탁가능 (안 제10조)

나.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안 제3조 ~ 제7조)
-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안 제9조)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사업명 : 충주 KM 그린CC (회원18홀) 조성공사
- 위치 : 충북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산 7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주)신니개발, 김상현
- 사업기간 : 2010년 10월 완료예정
- 총사업비 : 850억원

라.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 사업명칭 :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치 : 충주시 단월동 517-7번지 일원
- 대상면적 : 28,145㎡
- 노후불량건축물 : 121동 (전체149동 , 불량률 81%)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12. 31
- 사업비 : 16억원 (국비8, 도비1.6, 시비6.4)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이용하여 건축하게 된 자연생태체험관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 조례안을 보면 안 제4조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전국의 생태박물관, 또는 체험관에서도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부담없는 범위의 금액에서 관람료 징수는 필요
- 조례안 제5조에서는 관람료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한 바 타 시·군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도 감면의 대상으로 감안해야 할 것임
- 기타 규정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인 바 수탁단체의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필요
-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1회성에 그쳐 다시 찾지 않는 시설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체험관의 존재가치가 없고, 예산만 낭비된 실패한 사례로 남게됨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고 늘 방문객이 붐비는 생태 체험관을 유지할 수 있는 수탁단체에 체험관을 맡길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본 자연생태 체험관 관리·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음

나.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 이 조례는 지하수법의 위임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총체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는 지하수법에서 규정

- 본 조례의 실제적인 내용은 지하수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관리·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조례
- 현재 충주시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지하수공수는 16,000여공에 이르지만 법적으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재해대책용, 비상급수용, 농·어업공급용, 수도사업용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에 의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대상 지하수공은 1,700여 공으로 세입 예상액은 2억 정도
-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세입은 시·도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차입금, 과태료수입 등으로 충당
세출은 지하수의 조사, 사업자가 허가·신고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 내용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부담금 납부절차, 지하

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 대해 특이사항은 없다고 할 것이나

- 조례안 제13조에서 규정한 지하수원의 오염도를 조사하여 관리하기 위한 지하수수질측정망의 경우나, 지역지하수관측시설, 전이나 비상사태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등 지하수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기 보다는
-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의 수수료 감면조항에 추가하여 공공목적에 위하여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본 안건은 신니면 대화리 산7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충주 KM그린 골프장'의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
- 사업자인 (주)신니개발에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회사소유의 충주시 용산동 157외 1필지의 재산과 충주시의 공유재산인 신니면 대화리 산11-1번지 외 13필지를

교환 요청함에 따라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승인처리 해 준 사항

구분	공유재산(시유지)	(주)신니개발 부지	비고
위 치	신니면 대화리 산11-1외 10필 가금면 용전리 산18-12외 2필	용산동 157외 1필	
면 적	178,823㎡	3,807㎡	
감정평가액	1,176,924천원	1,153,521천원	
교환차액	23,403천원 / 신니개발 부담		

- 본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381,424㎡와 관리지역 542,624㎡를 골프장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
-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신니면 대화리 동화마을 주민 65명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음
주요 내용은 동화마을 소유의 산36번지를 (주)신니개발에서 매입토록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사업자측이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
- 기타 문제는 골프장 조성시 발생할 수 있는 농약오염, 소음, 비산먼지, 물오염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골프장 조성 전·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

라.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 금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단월동 신대마을은 단월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독립한 자연취락형태의 마을로서 74세대 223명이 거주하는 대부분 1층 단독주택지의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마을
- 마을내 골목길은 3~4m정도의 노폭으로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가할 뿐 아니라, 화재나 기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난차량진입이 어려워 재난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신대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곤란하고 도시환경이 불량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바 본 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
- 또한 본 안건은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
- 본 사업은 주민의 80%이상이 찬성하였으며 사업결정 후 추진하게 될 사업은 도로확포장, 다목적 광장, 주차장 조성, 상·하수도정비 등의 사업을 하게 됨

<사업량>

구분	도로	광장 조성	주차장 조성	상수도	하수도	비고
사업량	6×252m 8×619m	1,963㎡	448㎡	계획급수량:84t/일 연장 : 428m	최대오수량:66t/일 연장 : 436m	

- 본 사업이 종료되면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전반적으로 정주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
-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면서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질의 : 위치적인 면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나.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 ▶ 질의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 물이용부담금 160원의 절반인 80원을 부과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 질의 : 골프장 수요예측은 앞으로 무한정 허가를 내 줄수는 없지 않는지?

○답변 : 우리지역은 골프장여건이 좋아 인기가 좋음 걱정선이 어느정도인지 용역을 하려고 함

라.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 없음

6. 심사결과

가.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 수정가결

이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유사한 분야의 특별회계가 있을 경우 해당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여 주무부서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의견서 채택

라.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채택

- 붙임 : 1.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수정안 1부
- 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1부
- 3.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1부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운영중인 유사한 분야의 특별회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주시 지하수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제정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과 같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3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u>설치한다.</u>	제3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u>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운영중인 유사한 분야의 특별회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u>

의 건 서

□ 의 안 명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충주 KM그린 CC)

□ 심사경과

- 의안번호 : 989
- 상정일자 : 2008. 10. 10
- 의결일자 : 2008. 10. 10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의 건

- 골프장 건설은 우리시의 재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 향후 관광충주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전략과도 맞다고 할 수 있겠으나

- 골프장관련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업추진과정이나 사후 관리과정에서 수질오염이나, 농약살포에 의한 토양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008. 10. .
산업건설위원장

의견서

□ 의안명 :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

□ 심사경과

- 의안번호 : 990
- 상정일자 : 2008. 10. 10
- 의결일자 : 2008. 10. 10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의견

-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
-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면서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8. 10. .
산업건설위원장